

개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Overview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translation

개요는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으로,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선언

2000.6.27

각 수락국 정부¹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 국제 투자는 세계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며 각국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고;
- 다국적 기업이 이러한 투자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 국제 협력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다국적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 발전에 대해 할 수 있는 긍정적 기여를 장려하며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해결해 줄 수 있고;
- 상호 연결된 기체(instruments)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틀에 의해 국제 투자와 다국적 기업 관련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국제 협력이 주는 이익이 개선됨;

다음은 선언함: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 각국 정부는 공동으로 그 영토 내 또는 영토로부터 영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서문(Preface)에 정해져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부분인 여러 고려사항과 양해 사항을 고려, 이 부록 1에 정해진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²;

1. 2000.6.27 현재 지지 정부는 OECD 회원국 전체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슬로바키아 공화국이다.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도 그 권한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부분에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2. 다국적 기업 지침(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본문은 본 문서의 부록 (Annex) II 에 나와 있음.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p>II.1. 각 수락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필수적인 안보 이해(利害)를 보호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관련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각국 영토 내에서 영업하는 여타 수락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이하 “외국인 지배 기업(Foreign-Controlled Enterprises)”)에 국제법과 일관되며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에게 인정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자국 법, 규정 및 행정 관행 등에 따라 처우(이하 “내국민 대우”)할 것을 인정하며;</p> <p>2. 각 수락국 정부는 수락국가의 정부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p> <p>3. 각 수락국 정부는 그 영토 내 구획에서 “내국민 대우”를 적용할 것을 보장하며;</p> <p>4. 본 선언은 각 수락국 정부가 외국인 자본 유입 또는 외국인 기업 설립 조건을 규제할 권리를 다루고 있지 않음;</p>
상충되는 요건 (Conflicting Requirements)	<p>III.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상충되는 요건을 부과하는 사례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고 또한 본 부록 2에 규정된 일반적 고려와 실제적 접근법을 고려할 것임³.</p>
국제 투자 유인 및 저해요인 (International Investment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p>IV.1. 각국 정부는 국제 직접 투자 부문에서의 협조 강화 필요를 인식하며;</p> <p>2. 따라서 국제 직접 투자에 공식적 유인 및 저해요인을 제공하는 해당 부문 특정 법, 규제, 행정 관행(이하 “조치”)의 영향을 받는 각 수락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강화하고;</p> <p>3. 각 수락국 정부가 가능한 투명한 조치를 만들어 그 중요성과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함;</p>
협의 절차(Consultation Procedures)	<p>V. 각국 정부는 상기 사안에 대해 관련 이사회 결정(Decisions of the Council)에 따라 서로 협의해야 함;</p>
검토(Review)	<p>VI. 각국 정부는 수락국 정부들 간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 경제협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기 사안을 검토함.</p>

3.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상충되는 기준 관련 일반적 고려 및 실질적 접근법(General Considerations and Practical Approaches concerning Conflicting Requirements Imposed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본문은 OECD 웹사이트 www.oecd.org/daf/investment/ 에서 얻을 수 있음.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본문 및 이행 절차

본문

서문

1.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게 제시하는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이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대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운영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기업과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간 상호 신뢰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기여를 강화하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선언*의 일부이며 이 선언에서는 또한 내국민 대우, 기업에 대한 상충되는 요건, 국제 투자 유인 및 저해요인 등을 다루고 있다.
2. 국제 비즈니스는 폭 넓은 구조적 변화를 겪어 왔으며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가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며 진화해 왔다. 서비스와 지식집약형 산업이 부흥하면서 서비스 및 기술 관련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진입했다. 국제 투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대기업들이며 대규모 국제 기업합병 경향도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도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국제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내국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진화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사업 구조와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전략적 제휴와 공급업자 및 도급업자들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는 기업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3. 다국적 기업 구조의 급속한 진화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운영에도 반영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1 차적 생산과 채취 산업을 넘어 제조, 조립, 내수시장 발전 및 서비스로 다양화 되어 왔다.
4. 국제 무역과 투자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OECD 회원국들을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결속시켜주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심화 시켜 주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본국과 진출국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온다. 다국적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경쟁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자본의 공급자들에게 적절한 수익을 제공할 때 이러한 혜택이 발생한다. 다국적 기업의 무역과 투자활동은 자본, 기술, 인적 및 천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한다. 이들은 세계 각 지역의 기술 이전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기술 발전을 원활하게 해준다. 정식 교육과 현장 학습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은 진출국의 인적 자원 개발 역시 진작시키는 것이다.
5. 경제변화의 성격, 범위, 속도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도전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은 사회, 경제, 환경 목표 간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 관행정책을 이행할 기회가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역 및 투자가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적절하게 규제된 시장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강화된다.

6.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높은 기업 행동 기준을 준수하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을 입증해 왔다. 오늘날 경쟁의 힘은 강력하며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법적, 사회적, 규제적 배경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부당한 경쟁적 우위를 얻기 위해 적절한 행동 기준 및 원칙을 무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수 있다. 소수에 의한 그러한 관행은 다수의 평판을 문제 삼게 할 수 있으며 공공의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

7.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공공의 우려에 대해 우수 기업시민 정신, 우수 관행, 우수 기업 및 종업원 행동에 대한 책임을 뒷받침하는 내부 프로그램, 지침,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대응해 왔다. 그 가운데 일부는 컨설팅, 감사, 인증서비스를 요청해 왔고 이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수 기업 행동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켰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지지하는 정부들이 기업 행동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기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정의하려는 민간의 노력을 보완하며 강화하기도 한다.

8. 각국 정부는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제적인 법적 정책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간, 또 다른 참여자들과 협조하고 있다. 제 2 차 대전 이후에는 1948 년의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채택을 시작으로 이러한 틀이 발전되었다. 최근의 협정서로는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및 의제 21 (Agenda 21) 과 사회 개발을 위한 코펜하겐 선언(Copenhagen Declaration for Social Development)이 있다.

9. OECD 는 또한 국제적 정책 틀에도 기여해 왔다. 최근 진전된 것으로는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의 채택과 OECD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조세 행정 가이드라인 (ECD Guidelines on Transfer Pric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등에 대한 지속적 작업 등이 있다.

10. *가이드라인*을 수락하는 각국 정부의 공통된 목표는 다국적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 발전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여를 장려하고 기업들의 다양한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 활동함에 있어 각국 정부들은 수많은 기업과 노조, 그밖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부기구들과 제휴하게 된다. 각국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적절한 규제, 건전성 감독, 공정한 사법체계 및 법 집행, 효율적이고 정직한 공공행정 등을 갖춘 효과적인 국내 정책 틀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적절한 기준과 정책을 유지 및 장려하고 지속적 개혁을 실시하여 공공 부문 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I. 개념 및 원칙

1.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동 권고이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관된 우수 관행의 원칙 및 기준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는 자발적이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2. 다국적 기업의 운영이 전세계로 뻗어 있으므로 이 분야의 국제 협력은 모든 나라로 확대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수락하는 각국 정부는 각 진출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되 자국 영토에서 영업중인 기업들이 어디에서 영업하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3. *가이드라인*을 위해 다국적 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 다국적 기업은 주로 둘 이상의 국가에 설립된,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결된 회사 또는 다른 실체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체 가운데 하나 이상이 다른 실체들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기업 내에서 그들의 자치권은 각 다국적 기업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소유권 또한 민영, 국영, 또는 혼합형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모회사/현지법인) 내의 모든 법적 실체에 적용된다. 그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배분함으로써 서로 다른 법적 실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여 *가이드라인* 준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4.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대우에 차별을 두도록 하는데 있지 않으며 모든 기업을 위한 모범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기업 모두에게 *가이드라인*이 관련 있는 경우라면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기업이나 기업 행동에 대해 같은 행동을 할 것이 기대된다.
5. 각국 정부는 가능한 폭 넓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장려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수락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능한 완전하게 *가이드라인* 권고를 준수할 것을 장려한다.
6.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보호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국적 기업이 투자하는 어떠한 국가의 비교 우위를 문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각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르는 한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운영하는 조건을 규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양한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실체는 해당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다. 다국적 기업이 수락국에 의해 상충되는 요건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각국 정부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8.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는 각 기업을 형평성 있게 국제법에 의거하여 계약상 의무를 가지고 대우할 책임을 다할 것임을 양해하며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
9. 다국적 기업과 진출국 정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해결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 분쟁 조정 기제의 사용이 장려된다.
10. *가이드라인*을 수락하는 각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그 활용을 장려한다. 각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논의의 장으로 활약하는 국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수락국 정부들은 또한 적절한 검토 및 협의 절차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한다.

II. 일반 정책

다국적 기업들은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기존 정책을 완전히 고려하고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2. 진출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공약에 맞도록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을 존중한다.
3. 건전한 상관행에 대한 필요에 맞게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발전시키는 물론 기업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지의 지역 역량구축을 도모한다.
4.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종업원의 훈련을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 형성을 촉진한다.
5.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재정 유인 및 기타 안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규제적 틀 속에서 고려되지 않는 면제를 추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6. 모범적인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지지하고 유지하며 모범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발전시키고 적용한다.
7. 다국적 기업과 기업들이 영업하는 사회 간의 신용 및 상호신뢰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율규제 관행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8. 교육 프로그램 등 회사 정책의 적절한 보급을 통해 종업원들이 회사 정책을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9. 종업원들이 법률, 가이드라인, 또는 기업 정책에 반하는 관행에 대해 경영진에게 또는 필요한 경우 소관 공공 기관에 성실히 보고한다는 이유에서 차별적 또는 징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10. 실행 가능한 경우 공급업자 및 도급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 협력체들이 가이드라인에 상응하는 기업행동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11. 현지의 정치활동에 부적절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III. 정보공개 의무

1. 다국적 기업들은 그 기업 활동,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와 관련하여 정기적이며 신뢰성 있고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정보 공개는 다국적 기업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 부서나 지리적 지역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정보공개 정책은 비용, 기업 비밀 및 기타 경쟁적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성격, 규모, 지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2. 다국적 기업들은 정보공개, 회계, 감사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또한 환경 및 사회 관련 보고 등 비재무적 정보 보고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의 수집, 간행 기준 또는 정책은 보고해야 한다.
3.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의 이름, 장소, 구조, 모기업과 그 주요 자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호간 주식 보유를 포함한 모기업과 해당 계열사의 직간접적 지분 소유 비율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4. 다국적 기업은 또한 다음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회사의 재무 및 운영 결과;
 2. 회사 목표;
 3. 주요 대주주 지분 소유 및 의결권;
 4. 이사회 구성원 및 핵심 임원과 해당인들의 보수;
 5. 예측 가능한 주요 위험 요인;
 6. 종업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관한 중대 현안;
 7. 지배구조 및 정책.
5. 다국적 기업들이 다음을 포함한 추가적 정보를 전달할 것을 권장한다:
 - a) 기업의 사회, 윤리, 환경 정책 및 회사가 지지하는 기타 행동 기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대중적으로 공개되기 위한 가치 선언 또는 기업 행동 선언. 또한 채택일, 해당 선언이 적용되는 국가 및 실체, 해당 선언과 관계된 이행 등을 전달할 수 있다;
 - b) 위험 관리 및 법률 준수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 및 기업 행동 선언 또는 규범에 대한 정보;
 - c)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IV.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 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1.
 - a) 노조 및 기타 신의 성실한 종업원 대표들이 대변하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고용 조건에 대해 그러한 대표들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용자 단체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에 참여한다;
 - b)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에 기여한다;
 - c) 모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제거에 기여한다;
 - d) 종업원 특성과 관련한 선별이 고용기회의 평등을 특별히 촉진하거나 업무 고유의 요구 조건과 관련되는 기존 정부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인종, 피부 색,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국가적 계통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이유로 고용 또는 직업과 관련해서 종업원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2.
 - a) 종업원 대표들에게 효과적인 집단 합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 b) 종업원 대표들에게 고용 조건에 관한 의의 있는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c) 사용자와 종업원, 종업원 대표들 간에 상호 관심사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촉진한다.
3. 종업원과 그 대표들에게 회사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실적에 대해 진실되고 공정한 견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4.
 - a) 진출국의 상응하는 사용자가 준수하는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b) 직업상 건강 및 작업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영업에 있어 실행 가능한 최대한 수준까지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종업원 대표 및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종업원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히 집단 정리 해고 등과 관련된 사업장의 폐쇄 등의 영업상 변화를 고려함에 있어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종업원 대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부 기관에 제공하며 종업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가능한 최대한 악영향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각 경우의 특수한 환경에 비추어 경영진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있으면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의 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7. 고용 조건에 대해 종업원 대표와 신의 성실에 입각한 협상을 함에 있어, 또는 종업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협상에 불공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또는 단결권의 행사를 저해하기 위해 사업단위 전체 또는 일부를 해당 진출국에서 이전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종업원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특정 사업장으로 진출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

8. 승인된 종업원 대표들이 집단 협상 또는 노사 관계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들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위임 받은 경영진 대표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V. 환경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진출국의 법, 규제, 행정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또한 관련 국제 협약, 원칙, 목표,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과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광의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보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기업 맞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 a) 기업 활동의 환경, 보건, 안전 영향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평가;
 - b) 목표들 간의 지속적 관련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포함한 측정 가능한 목적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개선된 환경 성과 목표의 수립;
 - c) 환경, 보건, 안전 목적 또는 목표에 대한 진전사항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확인.
2. 비용 및 기업비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려하여:
 - a) 일반대중과 종업원에게 기업 활동이 갖는 잠재적 환경, 보건, 안전 영향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해당 정보에 환경 성과의 개선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 b) 기업의 환경, 보건, 안전 정책 및 그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적절한 의사소통 및 논의를 적시에 수행한다.
3. 의사 결정에 있어 기업의 공정, 상품 및 서비스의 수명 전체와 연관된 예측 가능한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한다. 이러한 제안된 활동들이 심대한 환경, 보건, 안전 상 영향을 가질 경우, 그리고 관계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한다.
4.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이해에 맞게, 또한 인간 보건 및 안전을 고려하고, 완전한 과학적 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구실로 그러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효율적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된다.
5. 재해 및 응급사태 등을 포함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및 보건 피해를 예방, 완화, 통제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국에 대한 즉각적 보고 체제를 유지한다.
6.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하여 기업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a) 기업 내 최상의 환경성적을 이룩한 부서의 환경 성과에 관한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운영 절차를 기업 전 부서에 채택;

- b) 부적절한 환경적 영향을 갖지 않고 의도된 용도상으로 안전하며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활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재사용, 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
 - c) 고객들에게 해당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의 환경적 함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
 - d)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7. 종업원들에게 환경 영향 평가 절차, 홍보, 환경 기술 등의 보편적인 환경 관리 분야는 물론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고의 예방 등 환경 보건 및 안전 사안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8. 환경 인식 및 보호를 장려하는 제휴나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의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VI. 뇌물과의 전쟁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권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뇌물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이익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의, 약속, 공여,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뇌물이나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청탁을 받거나 기대를 받아서도 안된다. 특히 기업들은:

1. 공무원이나 사업 협력체의 종업원에게 계약 지급액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제의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기업들은 공무원, 사업 협력체의 종업원, 또는 그 친척 내지 사업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도급, 매수 주문, 또는 컨설팅 협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대리인(agent)에 대한 보수가 적절하며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적절한 경우 공공 기구 또는 국영 기업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용된 대리인들의 목록을 보관하여 관련 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뇌물 및 뇌물강요와의 전쟁에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뇌물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채택한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 다국적 기업은 또한 대중에 대한 개방성 및 대화를 장려하여 뇌물 및 뇌물강요에 대한 투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협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4. 뇌물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회사의 정책을 적절히 보급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과 준수를 제고한다.
5. 뇌물 공여 및 부패 관행을 억제하는 관리 통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비밀 장부(off the books)” 내지 비밀 계좌의 개설 또는 관련된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하지 않는 문서의 생성을 방지하는 재정, 세무 회계 및 감사 관행을 도입한다.
6. 공직 또는 정당의 후보자 내지는 기타 정치 조직에 불법적인 기부를 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대중 공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위 관리자급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VII. 소비자 이익

소비자를 대함에 있어 다국적 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관행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취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건강상 경고 및 제품 안전, 정보 라벨 등의 소비자 보건 및 안전을 위해 합의된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한다.
2.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절한 정도에 따라 그 내용, 안전한 사용, 유지, 저장, 처분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3.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부당한 비용 내지 부담 없이 소비자와의 분쟁을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4.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이거나 불공정한 설명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5. 소비자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한다.
6. 기업의 상품 소비 또는 사용에서 유발되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예방 또는 제거함에 있어 공공 당국과 충분히, 투명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VIII. 과학 및 기술

다국적 기업들은:

1. 기업 활동이 영업 중인 진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에 상응하며 적절한 경우 현지의 국가 혁신 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업 활동 가운데 실행 가능한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급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을 채택한다.
3. 적절한 경우 상업적 필요를 고려하여 진출국의 과학기술 역량 내에서 진출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진출국에서 과학기술 개발 작업을 실시하여 현지 시장의 필요에 대처하도록 한다.
4. 지적 재산권의 사용 허가를 내 줄 경우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하여 진출국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
5.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는 경우 현지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과의 유대를 발전시키고 현지 업계 및 산업 단체와의 합작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한다.

IX. 경쟁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제 의 기본 틀 내에서 경쟁적인 방식으로 활동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1. 경쟁사들과 다음과 같은 반 경쟁적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 a) 가격 고정;
 - b) 담합 입찰;
 - c) 산출량 제한 또는 쿼터 설정; 또는
 - d) 고객, 공급업체, 영역 또는 거래선 할당에 의해 시장을 분배 또는 분할.
2. 반 경쟁적 행위로 인해 경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관할 영역의 경쟁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활동을 모든 적용 가능한 경쟁법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3. 무엇보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적절한 안전장치에 따라 해당 관할 영역의 경쟁 당국과 협조하며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가장 신속하고 완전한 답변을 하도록 한다..
4. 모든 적용 가능한 경쟁 법 및 정책의 준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종업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X. 조세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의 조세 부담액을 적시에 납부함으로써 진출국의 공공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영업 중인 모든 국가의 세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자구(字句)와 정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관련 당국에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될 정확한 세액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 가격결정 관행을 정상가 원칙에 맞추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이행 절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 결정

2000.6.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협약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고려하고;

자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해당 영토국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에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수락국 정부(“수락국”)들이 공동으로 권고하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선언”)을 고려하며,

다국적기업의 운영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어 선언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역시 모든 국가들로 확대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의 위임사항 (Terms of Reference), 특히 선언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에 관한 위임사항을 고려하며 [C(84)171(Final), C/M(95)21에서 갱신];

1976년 선언에 대한 제1차 검토 보고서 [C(79)102(Final)], 제2 차 검토 보고서 [C/MIN(84)5(Final)], 선언에 대한 1991년 검토 보고서 [DAFFE/IME(91)23], 및 가이드라인 2000년 검토 보고서 [C(2000)96]를 고려하고;

1991년 6월 개정 [C/MIN(91)7/ANN1]된 1984년 6월 제2차 이사회 개정 결정 [C(84)90] 을 고려하고;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안들에 대한 협의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991년 6월 개정 [C/MIN(91)7/ANN1]된 1984년 6월 제2차 이사회 개정 결정 [C(84)90] 을 폐지하고 이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I. 국내 연락 사무소

1. 수락국은 가이드라인이 다루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문의사항을 처리하며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담당하기 위해 첨부된 절차 지침을 적절히 고려해 국내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여 연락사무소가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계, 종업원 조직, 기타 이해 당사자들은 그러한 시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한다.

2. 각국의 국내 연락 사무소는 사무소 활동과 관련, 가이드라인 관계 문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일반적 절차로 여타 국내 연락사무소들과의 연락이 시작되기 전에 국내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국내 연락사무소는 연례적으로 회합을 갖고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II.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

1.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 (“CIME” 또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락국의 요청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안들에 대한 견해 및 그 응용에 있어 획득한 경험을 교환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여러 비정부 기구는 물론 OECD 기업산업 자문위원회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 및 노조 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자문 기구”) 를 정기적으로 초청,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자문 기구들과의 의견 교류가 해당 기구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위원회는 비수락국 대표와도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안에 대한 의견 교류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설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설명은 요청에 따라 실시된다. 개별 기업도 원한다면 그 이해관계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관련 사안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위원회는 개별 기업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5.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사무소의 활동에 관한 의견 교류를 가져야 한다.
6.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기능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첨부된 절차 지침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7.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 보고에서 위원회는 국내 연락사무소의 보고, 자문 기구들이 표명한 견해, 그리고 기타 비정부 기구와 비수락국 정부들의 견해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III. 결의 검토

동 결의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안을 작성해야 한다.

* * *

절차 지침

I. 국내 연락사무소

국내 연락사무소 (NCP) 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효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내 연락사무소들은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핵심 기준에 맞추어 기능적 평등이라는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A. 제도적 장치

기능적 평등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수락국 정부들은 국내 연락사무소를 조직함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 기업계, 종업원 조직,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기타 이해 당사자 등 사회 협력체의 지원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연락 사무소는:

1. 고위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이 이끄는 정부 기관일 수 있다. 또는 국내 사무소는 기타 정부기구의 대표를 포함한 협력 기구로 조직될 수도 있다. 기업계, 종업원 조직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대표 또한 포함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계, 종업원 조직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대표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한다.

B. 정보 및 홍보

국내 연락 사무소는:

1. 온라인 정보 등을 통하여 자국 내 언어를 사용해 적절한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장래 투자자(국내 및 국외) 역시 경우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 기업계, 종업원 조직 및 기타 비정부 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중들과 협력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3. 다음 당사자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다:
 - (a) 타국 국내 연락사무소;
 - (b) 기업계, 종업원 조직 및 기타 비정부 기구, 일반 대중; 및
 - (c) 비수락국 정부.

C 특수한 경우의 이행

국내 연락사무소는 특수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현안의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연락사무소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계, 종업원 조직 및 기타 이해당사자를 도와 제기된 현안을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 연락사무소는:

1. 제기된 현안이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지 최초 평가를 하고 이를 제기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답변한다.
2. 제기된 현안이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중재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내 연락 사무소는 해당 당사자들과 협의하며 적절한 경우:
 - (a) 관계당국 및 기업계, 종업원 조직 및 기타 비정부 기구의 대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는다;
 - (b) 관련 국가(들)의 국내 연락 사무소에서 자문을 얻는다;
 - (c) 특수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CIME에 지침을 요청한다;
 - (d) 현안 처리를 돕는데 있어 조정이나 중재 등 합의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은 방법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를 얻어 촉진한다.
3. 관계 당사자들이 제기된 현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선언문을 발표하고 적절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4. (a) 제기된 현안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민감한 기업 및 기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항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진행사항의 기밀성이 유지될 것이다. 절차가 마무리 될 때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된 현안의 해결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해당 당사자들은 그러한 현안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과정 중에 상대방 당사자가 제시한 정보 및 견해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 (b) 기밀유지가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해에 최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 한 뒤 이러한 절차의 결과가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5. 비수락국에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현안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이러한 절차들을 따르도록 한다.

D. *보고*

1. 각 국내 연락사무소는 연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2. 보고는 특수한 경우의 이행 활동을 포함한 국내 연락사무소의 활동 성격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II.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

1.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그 책임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해석에 관한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포함, 국내 연락사무소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기하는 요청을 검토한다.

3. 위원회는:
 - (a) 국내 연락사무소의 보고를 검토한다.
 - (b) 국내 연락사무소가 특수한 경우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탁국 또는 자문 기구가 자료 첨부된 의뢰를 검토해야 한다.
 - (c) 국내 연락 사무소가 특수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해석했는가에 대해 수탁국 또는 자문 기구가 자료 첨부된 의뢰를 제출하는 경우 해명서발표를 고려한다.
 - (d) 필요에 따라 권고안을 내어 국내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제고하도록 한다.
4.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다루고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결정할 것이다.

본 개요는, 영어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프랑스어(Les principes directeurs de l'OCDE à l'intention des
entreprises multinationales) 표제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2003, OECD

추가 정보는 www.oecd.org/daf/investment/guidelines 참조

OECD 출판물과 개요는 www.oecd.org/bookshop/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Online Bookshop 홈페이지의 “Title search”박스에서 “Overview”를
입력하거나 해당 영어 표제를 입력하십시오.
(개요는 영어 출판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본 개요는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의
OECD Rights and Translation 부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mail : rights@oecd.org / Fax : + 33 1 45 24 13 91



© OECD, 2003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